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4. 14.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4월 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 4,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2005년 제정·운용하고 있는 청사건립 기금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아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동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 종전 기금 및 기타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본 폐지조례안은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조례(2005년1월5일 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여, 현재 청사건립기금의 적립잔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사건립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된 163억원과 이자수입 35억 6,324만 1천원이 적립되어 총 198억 6,324만 1천원이 조성되었으나, 이 중 **7천 479만원을 지출**1) 하여 3월말 현재 197억 8,845만 1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참조】통합기금에 197억 8,844만 2천원, 일반예금(부서 예치금)으로 9천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기금 예치금중 197억원을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예탁하였음.
- 조례 폐지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05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었으나, 2010년 행정안전부의「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청사건립 추진이 장기간 유보되었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에서 차입한 197억원의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2023년 까지 매년 20~30억원의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재정에 많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통합기금 원리금 상환 추이 >

(단위 : 백만원)

회계년도	융자액 계 (A)	상환대상 금액			융자잔액
		계	원금(B)	이 자 (A*2%)	(C=A-B)
2015년도	22,620 ²⁾	2,359	1,907	452	20,713
2016년도	20,713	2,321	1,907	414	18,806
2017년도	18,806	2,283	1,908	376	16,898
2018년도	16,898	2,245	1,908	338	14,990
2019년도	14,990	3,300	3,000	300	11,990
2020년도	11,990	3,240	3,000	240	8,990
2021년도	8,990	3,180	3,000	180	5,990
2022년도	5,990	3,120	3,000	120	2,990
2023년도	2,990	3,050	2,990	60	0

※ 원리금 상환기준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2%

¹⁾ 제2청사 타당성용역 학술연구 22,000천원(2009년도), 구청사 정밀안전 진단용역 52,790천원(2011년도)

²⁾ **22.620백만원 = 7.630백만원** [11.620(2010년도 융자금) - 3.990(2014년도 상환액)] + **14.990백만원(2014년도 융자금)**

○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2호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폐지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기금의 일반회계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부담을 해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나, 조례 폐지에 따라 실제로 일반회계에 전입될 기금규모는 일반회계 예탁금을 제외하면 8,844만 2천원(통합 기금 예치금)정도로써, 세입규모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현황(2014. 3. 31현재)

(단위 : 천원)

년도	수 입 액			z) × où	ച്ചറസ്
	출연금	출연금 이자액 등		지출액	현 보유액
총계	16,300,000	3,563,241	19,863,241	△74,790	19,788,451
2005	1,000,000	-	1,000,000	ı	1,000,000
2006	1,000,000	34,010	1,034,010	-	1,034,010
2007	12,300,000	93,362	12,393,362	-	12,393,362
2008	1,000,000	578,010	1,578,010	-	1,578,010
2009	1,000,000	989,097	1,989,097	△22,000	1,967,097
2010		709,702	709,702		709,702
2011	_	367,770	367,770	△52,790	314,970
2012	_	324,584	324,584		324,584
2013	_	405,978	405,978		405,978
2014.3월	_	60,728	60,728		60,7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80 호 제출연월일: 2014.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05년 제정·운용하고 있는 청사건립 기금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아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동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나. 종전 기금 및 기타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 략

※ 사 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호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어 온 기금 및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